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규정

제정	:	2014.	1.	21
개정	:	2014.	11.	6
개정	:	2018.	12.	7.
개정	:	2019.	11.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교육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임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및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합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으로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년 전임교원
-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정년 또는 비정년 전임교원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교원은 산업체 경력과 관계없이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단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 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③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시유가 없는 자

제4조(임용)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1호와 같이 임용한다.

- 1.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은 공개 또는 특별채용으로 한다.
- 2.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봉 및 기간 계약제로 임용하다.

- 3.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4.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임용의 절차는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장을 준용한다.
-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1호와 같이 임용하다.
- 1.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서식1의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이 신청자 중 임명한다.
- 2.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기간은 1년 단위로 하다.
- 3.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중점 교수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제5조(직급)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직급은 조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연수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임용계약 및 보수)** ① 대학의 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원의 교육·연구·산업체 경력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다.
-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임용기간의 연장시 연봉 조정은 본교 전임교원 보수 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 ④ 상여금과 각종 제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호봉을 적용받는 정년제 전임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퇴직금)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기간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며, 그 적립액은 퇴직금으로 대치되다.

제8조(복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복무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적용한다.

- **제9조(의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과에 소속되며,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강의 시간의 30%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사업무협조 등 본 대학교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없다.
- ④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0월 말일까지 업무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교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여야 한다.
- 제10조(역할) ① 현장실습, 현장견학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간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산업기술 인력의 재교육과 교내외에서 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다.
- ③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등을 담당하다.

④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담당한다.

제11조(신분보장)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과 신분을 보 장하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기간 중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다만, 소속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간제 재임용)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업적평가)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는 매년 10월까지 제출한 업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 자료는 재임용 및 연봉책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표는 따로 정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 위	

2. 산업체 경력사항

근무처	담당업무	직급	근무기간

3.	3. 산학협력활동 계획						

4. 지정기간: ○○○○. ○○. ○○. ~ ○○○○. ○○. (1년)

위 본인은 「수원과학대학교 신학협력중점교수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로 신청하며, 「수원과학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산학협력중점 교수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과학대학교총장 귀하